

—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7월 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8일

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- 우리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
-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강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1)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(안 제2조)

-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함
-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둠

2)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(안 제3조)

-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~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-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함.
- 3) 위원의 임기·해촉(안 제7조, 8조)
 -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사망·질병·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
- 4)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,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5)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.(안 제9조)
- 6)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(안 제11조)
- 7)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. (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·제1조의4
- 조례표준안(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 -3347<2005. 1. 3>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